

# 죄값을 치르려는 노인의 자기방임

## I. 사례개요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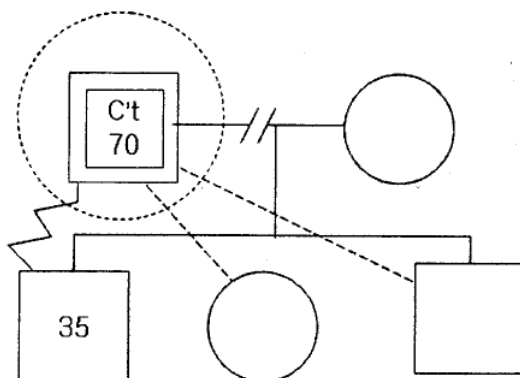
- 거동이 불편한 c't가 가족들의 왕래가 단절된 상태로 방임되어 개인위생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신변의 위험이 우려 된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례 접수됨.
- c't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사람이 생활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결한 상황이며 c't는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음. c't는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깥출입을 하며 딱지를 줍는 등 활동을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거동을 못하게 된 것이며 집 안에서 풍기는 악취 및 월세의 체납으로 집주인 및 이웃들과 갈등관계에 있음.
- 신고자가 c't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자녀들은 생활형편 등을 이유로 부양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 접수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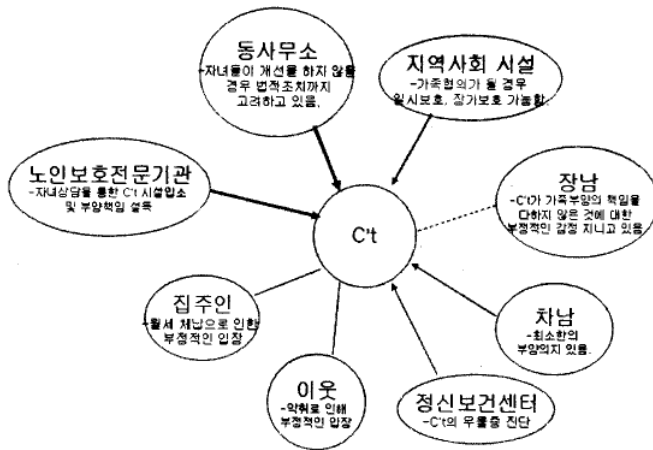
- c't : ○○○(70세/남)
- 학대행위자 : 장남(35세)
- 학대유형 ' 방임 및 자기방임
- 학대상황 '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c't는 자녀들로부터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상황이었음.

## II. 사정

### 1. 가계도



2. 생태도



3. 문제 사정

가. c't 사항

- 알콜릭을 가지고 있으며 식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기력이 쇠한 상태임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이며 자녀들과의 왕래마저 단절되었고 이웃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음.
- c't는 이와 같은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극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은 자기방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나. 학대행위자 사항

- 학대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원인은 과거부터 가족들의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c't의 알콜릭임. 또한 학대행위자는 c't의 배우자에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c't에 대한 부양에 여력이 없음을 호소하고 있음.
- 과거 c't가 자녀들의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c't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시 이에 대한 법적 확인도 진행할 것이라고 함.

다. 기타주변인 사항

- 관할 동사무소 : c't의 상황 개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생각하고 있음.
- 사랑의 집(양로시설) : c't의 집 주변에 위치한 요양시설로 c't사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들과 협의될 경우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가능함.
- 이웃/집 주인 : c't의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c't가 거주하는 집은 물론 집 밖 복도까지 악취가 풍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웃 및 집주인은 c't와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집주인의

경우 월세까지 체납하고 있는 c't를 내보내고 싶어 함.

4. 욕구

c't 욕구	학대행위자 욕구
오랜 방임과 주변과의 갈등, 단절로 인해 우울증 및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으며 상황개선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으며, 공적인 서비스의 수급 역시 거부하고 있음.	c't에 부양책임을 벗어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함.

III. 개입

1. 개입목표 및 계획

- 계획 I. c't 설득을 통한 생활상태 개선 필요성을 인지시켜 인근의 시설에 일시 보호 조치.
- 계획 II. c't가 일시보호 거부 시 관할 동사무소 및 집 주인과 동행하여 c't의 거주지 이전을 촉구하여 일시보호 조치.
- 계획 III. 자녀 상담을 실시하여 c't부양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황의 급박성 및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c't시설입소 및 비용 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계획 IV. c't가 과거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관할 동사무소를 통한 수급권을 연결하고 피해자 시설입소.

2. 개입과정

가. 현장조사

- c't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상태 및 방임의 정도에 대해 확인함.
- c't는 하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둔부에 욕창이 발생한 상태임. 집안은 몹시 불결하였으며, 식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고 있었음.
- 동사무소 담당자와 동행한 가운데 c't 상담을 실시하고 일시보호 조치를 위한 설득을 실시함. c't는 일시보호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해 거부하였으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였음.

나.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피해자 정서 상태 확인

- 이에 c't의 정서적인 문제가 의심되어 정신보건센터에 사례를 연계하여 c't의 정서상태 파악함.
- c't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곡기를 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기력이 쇠한 상태임.

- 우울증 증상이 심각하여 당장이라도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무기력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함.

다. 가족상담

□ 장남의 배우자

- 현장조사 당일 피해자의 심리상태 파악 후 상황의 위급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우선으로 가족상담 실시함.
- 학대행위자인 장남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장남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상태로 장남의 배우자(피해자의 며느리)가 전화 응대하였음.
- 며느리는 장남이 c't에 대해 몹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c't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원인은 과거 c't가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며 가족의 부양에 무책임 하였으며 장남이 성장 과정에서 c't를 마주한 것은 거의 경찰서에 취해있는 c't를 업어서 모셔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함.
- 하지만 피상담자는 c't에 대한 왕래를 최근까지 지속하였으나 방문시마다 불결한 집안에서 술이 취해 있는 c't를 보게 되었고 이런 일의 반복으로 인해 발길이 멀어진 것이라고 함.

□ 차남

- 차남 역시 장남과 마찬가지로 c't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c't에 대한 최소한의 부양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상태임.
- 하지만 현재 어머니(피해자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c't에 대한 시설비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c't가 심각한 우울 상태로 자살의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인 부담보다 c't의 안전이 우선임을 강하게 인지시킴.
- 차남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부양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나 자녀양육을 하지 않은 c't에 대해 자녀들의 법적 부양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라. 일시보호

- 현장조사 당일 c't의 완강한 거부로 일시보호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익일 동사무소와 집주인이 c't를 계방문하여 집주인 측에서 밀린 월세와 약취를 이유로 거주지 이전을 요구하였고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는 일시보호에 동의하였음.
- 사전에 협조를 구해 두었던 인근의 시설에 c't 일시보호 조치 됨,

마. 장기적인 부양안 마련

- 가족 상담과 c't수급권 책정에 대해 동시에 사례 진행하였으며 가족 보호를 우선으로 두되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급권 책정 고려함.
- 가족 상담을 실시하여 c't가 일시 보호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장기적인 보호를 위해 시설비의 부담이 필요함을 알림.

- 동사무소 측에 피해자가 과거 가족의 부양을 소홀히 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자녀들의 소명서를 받아 수급권 책정에 대해 논의함.
- 가족 상담 결과 차남이 c't를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시설비를 납부하게 되었음.

#### IV. 평가 및 제언

c't의 음주 및 불성실한 가정생활이 원인이 되어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어왔던 가족사를 가진 사례로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학대 상황이기보다 가족사에 의한 총체적인 문제 상황이 노인의 방임과 자기방임의 형태로 표출된 사례이다.

c't 스스로 과거 행위에 대한 후회로 인해 가족들과 관계 개선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며 자녀들 역시 피해자 부양에 소극적이었으나 관할 동사무소, 정신보건센터 및 지역사회 생활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총체적인 개입으로 가족 부양을 도출하였으며 c't에 대한 적절한 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었다.

가족 단절의 원인이 c't 본인에게 있을 경우 c't의 보호에 대해 가족들이 역할을 해야 할 경우 가족들에 대한 감정 문제에 대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